

2014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2월 20일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이사회

I . 개회

- 개회사 : 김대원 회장
- 참석자 및 정족수 확인 : 김대원,오현석,최혜선,류희진,마광,박언경,박주석, 이길원(감사) 8명 참석

II . 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선출

신규이사 대상자 : 김대중, 이세련, 최혜선

< 이사현황 >

1. 2013년 11월 기준 이사 수 : 48명

강 호, 강준하, 권현호, 고준성, 김규태, 김대원, 김두수, 김범수, 김병일, 김여선, 김인숙, 김종범, 김종우, 김준기, 김채형, 마 광, 박노형, 박덕영, 박원석, 박지현, 배정생, 서원상, 서철원, 성재호, 손기윤, 신희택, 심영규, 안덕근, 오선영, 왕상한, 유선봉, 유준구, 이로리, 이성덕, 이영애, 이재민, 이재형, 이지형, 이환규, 장승화, 정영진, 정찬모, 조영진, 주진열, 최승환, 최원목, 최정순, 표인수

2. 2013년 12월 정기총회 신규 이사 수 : 7명

박언경, 박지현, 유예리, 유희진, 이기범, 이길원, 최송자

※ 논의결과

상기 3인(김대중, 이세련, 최혜선)에 대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사로 선출함

2. 정관개정 건

관련규정 :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학생회원)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 (1) 현행과 같음 (2) <u>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u>	회비납부 제도 정비에 따른 규정 개선 - 학생회원 회비 면제

신 설	<u>제11조의2(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u> 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u>(2) 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u>	학회 등기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 :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자를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등기비용 절감
제12조(임원) (1) ~ (3) 생략 (4) 차기회장은 당연히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생략	제12조(임원) (1)~(3) 현행과 같음 (4) 차기회장은 <u>당연직</u>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3조(임원의 선출) (1)~(3) 생략 (4) 감사는 이사회에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3) 현행과 동일 (4) 감사는 이사회에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u>이사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u>	감사로 선출된 이사의 직무범위 명확하게 규정
제15조(이사회에의 의결) (1) 이사회는 - - - - -	제15조(이사회에의 의결) <u>이사회는 - - - - -</u>	자구 수정

※ 논의결과 1. 총무이사의 개정안 설명 후 개정조문 별로 의결진행 2.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단, 신설조항인 제11조의2(총회의사록) 중 “ <u>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u> ” 부분은 법무사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원안대로 통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할 것을 조건부로 의 함.	
--	--

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구윤리규정 개정건

관련규정 :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생략 ② - - - - - 연구윤리이사와 - - - - - ③ - - - - - 연구윤리이사가 되며, - - - - - ④ 생략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현재와 같음 <u>② - - - - - 연구이사와 - - - - -</u> ③ - - - - - <u>연구이사가 되며</u> - - - - - ④ 현재와 같음	자구수정
제5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4. 한국학술진흥재단 - - - - -	제5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4. <u>한국연구재단</u> - - - - -	자구수정

※ 논의결과 1. 총무이사의 개정안 설명 후 개정조문 별로 의결진행 2.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4. 회비제도 개선

관련규정 : 제18조(본회의 재원) (2) 입회금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이사 회비 10만원 일반회원 회비 5만원 학생회원 회비 3만원 평생회원 회비 50만원(7명 납부)	이사 회비 10만원 일반회원 회비 5만원 학생회원 회비 면제 평생회원 회비 50만원 단체회원 회비 100만원	- 학회원 명부 관리 및 학회비의 현실화 추진 - 학생회비 면제하는 대신 출판물 미 발송. 단 출판물 수령 희망자는 일반회원으로 관리 - 집행이사 및 감사 회비면제(당해년도 회장방침)

※ 논의결과

1. 총무이사가 회비제도 개선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설명진행
2. 김대원 회장의 발의에 따라 집행이사 및 감사 회비면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함
3. 2014년도 회비부터 상기 기준에 따른 회비제도 운영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Ⅲ. 이사회 보고사항

1. 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학회 세무신고건

- 학회재산 신고 : 경상비 통장 및 적립금 통장 신고
- 향후 학회의 수입금액(이자수입 등) 신고 및 기부금 발급명세 내역 신고
- 인세수입에 대해서는 학회 수익사업이 아닌 기부금 수입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저자분들께 기부금 납부영수증 발급할 예정임.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세무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음.

2. 신설 정관 제11조의 2에 따른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자

- 회장 / 수석부회장 / 감사 2인으로 운영할 예정임.

3. 국제경제법연구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건

관련규정 : 제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논문게재료 등)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집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용역보고서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게재료 등) ① ----- 소정의 게재료를 <u>부과할 수 있다.</u> ----- <u>②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u>

※ 논의결과

1. 총무이사가 심사규정 개정건 및 관련절차에 대한 설명진행

2. 김대원 회장 및 유희진 출판이사의 발의에 따라 반론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함.

3. 논의결과 제8조는 상기 조문대로 편집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며, 반론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제5조 ⑤항에 후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편집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제5조(심사방법 등)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 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투고자는 반론권이 있다.”

(밑줄 후단 추가)

정기총회

I . 개회

- 개회사 : 김대원 회장
- 참석자 및 정족수 확인 : 김대원,오현석,최혜선,류희진,마광,박언경,박주석, 이길원(감사) 8명 참석

II . 정기총회 의결사항

1. 정관개정 건

관련규정 :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에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공동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학생회원)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국제경제법 또는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 (1) 현행과 같음 (2) <u>정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회원은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u>	회비납부 제도 정비에 따른 규정 개선 - 학생회원 회비 면제
신설	<u>제1조의 2(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 (2) <u>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제1)항에서 정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가 공증을 위임할 수 있다.</u>	학회 등기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 :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자를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등기비용 절감
제12조(임원) (1) ~ (3) 생략 (4) 차기회장은 당연히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생략	제12조(임원) (1)~(3) 현행과 같음 (4) 차기회장은 <u>당연직</u>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5) 현행과 같음	자구 수정
제13조(임원의 선출) (1)~(3) 생략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3) 현행과 동일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u>이사가 감사로 선출된 경우 이사의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의 직무를 마친 후 이사의 임기를 계속한다.</u>	감사로 선출된 이사의 직무범위 명확하게 규정
제15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 - - - -	제15조(이사회의 의결) <u>이사회는 - - - - -</u>	자구 수정

※ 논의결과

1. 총무이사의 개정안 설명 진행. 특히 제11조의 2 조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 진행. “신설조항인 제11조의2(총회의사록) 중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분은 법무사와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원안대로 통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할 것을 조건부로 의 함.”
2. 상기 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함.

II. 정기총회 보고사항

1. 신규선출 이사

※ 이사회에서 3인의 신규이사(**김대중, 이세련, 최혜선**)에 대하여 선출하였음을 보고함.

2. 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학회 세무신고건

- 학회재산 신고 : 경상비 통장 및 적립금 통장 신고
- 향후 학회의 수입금액(이자수입 등) 신고 및 기부금 발급명세 내역 신고
- 인세수입에 대해서는 학회 수익사업이 아닌 기부금 수입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저자분들께 기부금 납부영수증 발급할 예정임.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세무사와 업무협의 중에 있음.

3. 신설 정관 제11조의 2에 따른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자

- 회장 / 수석부회장 / 감사 2인

4. 국제경제법연구 투고논문 심사규정 개정건

현 행	개 정 안
제8조(논문게재료 등)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집필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용역보고서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게재료 등) ① ----- 소정의 게재료를 <u>부과할 수 있다.</u> ----- <u>②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 - - - - .</u>
제5조(심사방법 등)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 등) ⑤ ----- . <u>이에 대해 투고자는 반론권이 있다.</u>

※ 상기 개정안의 취지 및 향후절차에 대한 보고를 진행함.

5. 회비제도 개선 등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이사 회비 10만원 일반회원 회비 5만원 학생회원 회비 3만원 평생회원 회비 50만원 (7명 납부)	이사 회비 10만원 일반회원 회비 5만원 학생회원 회비 면제 평생회원 회비 50만원 단체회원 회비 100만원	- 학회원 명부 관리 및 학회비의 현실화 추진 - 학생회비 면제하는 대신 출판물 미 발송. 단 출판물 수령 희망자는 일반회원으로 관리 - 집행이사 및 감사 회비면제(당해년도 회장방침)

※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비제도에 대한 보고를 진행함.